

##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 회사가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공시하는 방법을 정한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해소시한(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소시한은 2002. 3. 31)까지 출자한도(순자산의 25%) 초과분을 미해소 한 회사는 고시에 의거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을

공시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7조의2).

금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한도 초과상태를 해소(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 이내)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주식매각, 과징금 부과 대신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을 공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금번 제정된 고시에서는 공시대상회사, 공시내역, 공시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공정위는 2002. 5. 29.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능력 강화로 소비자선택이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도모하고, 소비자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에서의 거래질서를 확립,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특수거래를 공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를 위주로 약관의 공정화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위의 2002년도 주요 소비

자보호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정위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소비자정보 제공 관련 시책

중요정보고시제가 소비자정보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정정광고를 활성화하며, 주 소비자계층이 광고에 취약한 계층이거나, 판매방식이 소비자요인을 유발하기 쉬운 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광고실증제 적용을 강화하고, 부당표시광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방문·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 분야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특수거래 분야의 거래를 공정화 하는데 금년도 소비자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 3. 약관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

개별적인 약관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

준약관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에 비해 구조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4.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추진과 관련,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 후불식 전화결제, 부모 요청시 사용제한 기능토록

공정위는 최근 영화나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 유료화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ARS를 통해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사용, 요금분쟁 및 오류에 의한 과다요금 부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후불식 전화결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그 동안 소비자단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업계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① 휴대폰이나 ARS 전화결제에 있어 가입자 또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후불결제 자체를 사용제한(Blocking)할 수 있도록 하고, 월 결제한도도 시스템 구축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② 후불결제 거래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요금고지서에 콘텐츠업체와 금액, 이용시기 등을 구분 표시토록 하고, 홈페이지나 무료전화 등을 통해 상세 사용내역에 대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체 조회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키로 하였으며, ③ 후불

식 전화결제에 있어 오류에 의한 과다요금 부과에 관한 입증이나 부당요금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약관·계약서상에 미비되거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요금분쟁이 발생하면 원활한 소비자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자간의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요금분쟁 및 오류에 의한 과다요금 부과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동 기준의 내용으로는 첫째, 요금분쟁 발생시 고객상담 경로는 결제과정에서 고객과 1차 접점에 위치한 유·무선 통신업체가 담당하거나, 후불식 전화결제 관련 사업자들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자가 담당하고, 둘째, 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 제기시에는 해당 요금의 미납·체납을 이유로 통화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셋째, 분쟁해결 전까지 해당 요금의 납부를 연기(Holding)하고, 그에 대한 신용불량 신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동 개선방안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관련 「소비자보호지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규정 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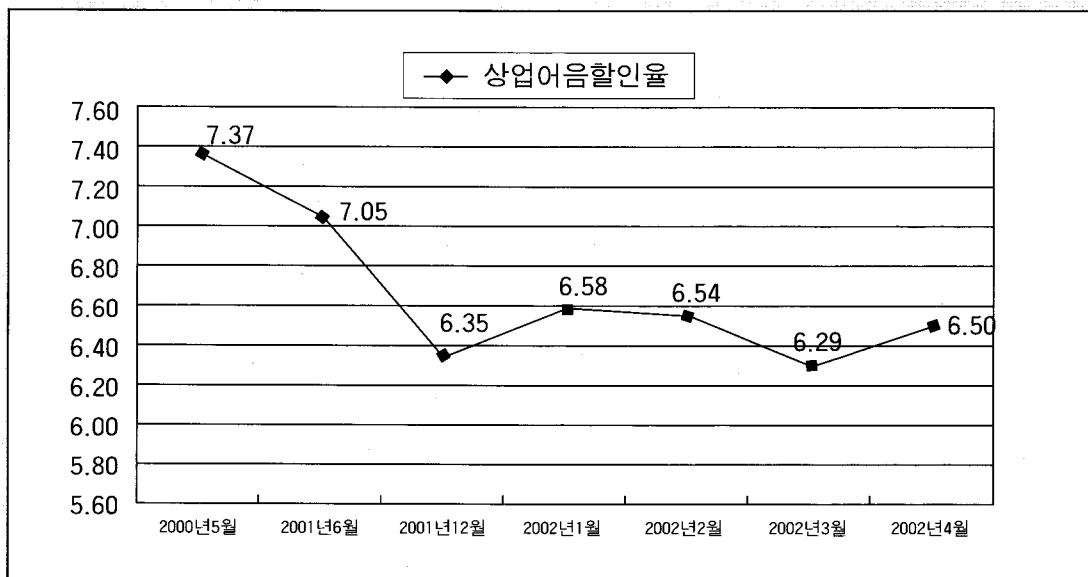
### 공정위, 하도급 어음할인을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을 고시를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현행 연 9%에서 7.5%로 인하하였다.

동 고시의 개정은 시중 상업어음 할인율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10일부터 교부되는 어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새로이 적용되는 할인율은 2002년도 1/4분기 시중은행 상업어음 평균할인율(6.5%)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 1%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건설, 제조 등 하도급거래 분야에 있어서 금융비용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한국은행 발표)

## TV홈쇼핑 실태점검 및 부당행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분야에서 시장경쟁 및 소비자권의 향상에 역행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6~7월중에 TV홈쇼핑업체 실태점검 및 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는 공정위가 2002년도에 추진하는 6개 분야의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최근 TV홈쇼핑이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TV홈쇼핑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소비자피해도 증가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5개 대형 전문 홈쇼핑업체(LG

홈쇼핑, CJ39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외에 다른 CATV 프로그램채널의 일정 광고시간을 임대하여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 TV홈쇼핑업체(인포머셜업체라고 부름)를 포함하여 모두 3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홈쇼핑 방송광고 송출을 위한 광고방송 심의를 받지 않거나, 홈쇼핑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중계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중에 있다.

### ▣ 주요 점검분야 및 내용

-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대폭 할인했다고 광고하는 사례
-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한 특별가, 할인가, 대박 등의 용어사용의 적절성
- ○○개 한정판매 또는 ○○명 선착순 판매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판매수량은 이와 다른 사례
- 주문 채도, 마감임박 등 소비자의 오인성을 유발하는 사례
- 전문가, 의사, 교수, 효능 체험자 등을 출연시킨 홈쇼핑광고의 진위 여부 등
-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납품업체에게 거래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착수

공정위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있

어서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관행을 파악·시정하기 위하여 2002. 6. 14부터 15

일간 처음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일반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조사하여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고, 과도한 관리비 부담 등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

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의 주요 공공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으로는 ①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② 임차인과 체결한 약관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③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는지 여부, ④ 주택관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 2002.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2년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4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5월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358개에서 360개로 2개사가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계열회사수는 349개에서 351개로 2개사 증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수는 2002. 5. 1. 707개에서 6개사가 신규편입되고, 2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2. 6. 1. 현재 711개로 4개사가 증가하였다.

### 2002. 5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5.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6.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707	3	3	6	1	1	0	0	0	2	4	711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358	1	1	2	-	-	-	-	-	0	2	360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349	2	2	4	1	1	-	-	-	2	2	351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5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6개사(주식취득 1, 회사설립 3, 기타 2)
- 제외 : 2개사(합병 1, 지분매각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두 산	(주)노보스	경영자문업	주식취득	-	-	-
	두산 스피리츠(주)	광고대행업	회사설립			
대 광 산 업	(주)에이비씨어드 벤처티브이	방송프로그램 제작및공급업	회사설립	-	-	-
	(주)에이비씨 애니메이션티브이	방송프로그램 제작및공급업				
대 성	(주)모토닉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 타	-	-	-
	대성정기(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 립	-	-	-	(주)아이씨티로	온라인정보 제공업	대림아이엔에스 (주)에 피합병
제 일 제 당	-	-	-	(주)엠비씨 드라마넷	프로그램 공급업	지분매각

\* 「두산」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공정위  
인사동향**

인사발령일 : 2002. 5. 16.

-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김상준(서기관)  
 독점정책과장 이재구(서기관)  
 조사1과장 최정열(서기관)

인사발령일 : 2002. 6. 1.

- 과장급(서기관) 전보  
 심판관리3담당관 정정길(표시광고과)  
 국제협력과 김형배(제도개선과)

인사발령일 : 2002. 6. 4.

- 이사관 승진  
 공보관 이동규(부이사관)  
 하도급국장 백승기(부이사관)